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84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발 의 자: 이종태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민병주,
박 석, 소영철, 옥재은,
유만희, 유정인, 윤기섭,
이봉준, 최민규, 허 훈,
홍국표 의원(2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, 교원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 및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연속성있는 통합교육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과 조기 발견 및 관리 등을 명시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강화하고,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
- 또한 2025년 2월 28일에 개정 시행 예정인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 제21조의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
- 이와 함께 교육 시책 추진 시 인적·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학생과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도 감독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.

- 아울러, 학부모와 전문가 및 관기관 담당자 등이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교육 위한 인적·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및 정책 수립, 통합교육 지원 강화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, 제8조의3)
- 나.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보장하고 연속성있는 통합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실태조사 공개 의무(안 제6조1항, 제11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1항 및 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인적·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3(통합교육 지원)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

애유형·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
2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
3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
4. 제9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
5.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
6.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)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인적·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교육감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장벽 없는 정책이 수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<u>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(실태조사 등)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, 이에 관한 통계를 <u>작성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교육청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8조의3(통합교육 지원) 교육감</u></p>

<신 설>

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·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합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1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및 정보관리
2.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
3.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
4. 제9조에 따른 교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지원
5.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
6. 그 밖에 교육감이 센터의 업

<신 설>

제11조 · 제12조 (생 략)

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)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교육정책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13조 · 제14조 (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, 제8조의3(통합교육 지원), 제11조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, 제12조(특수교육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)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연번	관련 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6조제3항 (실태조사 등)	×	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실태조사(매년 3년단위) 실시 후 게재하고 있어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2	제8조의3(통합교육 지원)	×	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 ¹⁾
3	제11조 (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	△	서울특별시교육청 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
4	제12조 (특수교육정책자문단구성및운영)	×	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기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비용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안 제11조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추가 설치·운영하도록 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추가 설치 규모, 내용 등이 정해지지 않아 비용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곤란함

※ 2024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 현황

- 사업명 :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
- 사업대상 :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외 10개센터
- 편성예산 : 1,135,652천원(특수교육지원센터 공공요금 지원 170,000천원 포함)

* 자료 :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

1) 2024년 통합교육지원 사업 운영(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)

- 사업목적 :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여건 개선 및 통합교육 실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
- 사업내용 : 교육과정중심통합교육, 장애공감문화조성, 통합교육전문가협의체구축 및 운영, 통합교육활성화연수지원
- 예산 : 261,78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